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0. 4. 29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 5. 6

다. 상정일자 : 제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총 입장료의 30%를 사용료로 할증하여 적용 하던 것을 영화상영에 한하여 축소 적용토록 조정하여 대중공연 예술의 활성화 도모

○ 실외 수영장의 입장료를 소폭 인상하여 적자 운영 개선

나. 주요골자

○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기본사용료를 포함하여 총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던 것을 영화상영에 한하여 적용토록 축소 조정함.

○ 수영장 입장료를 소폭 인상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총 입장료의 30%를 사용료로 할증 적용 하던 것을 대중 예술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에 한해 적용하고, 청소년 문화회관의 수영장 입장료가 사설 수영장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적자운영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두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중 노인, 어린이를 제외한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